## 기준가격

· 일반적으로 기준가격은 전일종가를 적용

一类结块

✗· 전일종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: 기준가격을 새로 적용

() 유·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,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, 주식분할, 액면병합등에 따라 그 전후의 주식가치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(이론가격으로 산출) (사장에서 결정) (기구 인하여 전일종가가 없는 경우(사장에서 결정)

[] 등, 해당 사례들이 [] 이 있는 사람이 있음 등 해당 시간 들이 대해선 '당나기기'이 먹어되고, 해당 당나기계는 통해 '기술기계'은 산호함.

- (내네신 `첫차차경'이 없음. '네가 첫차차경'을 존합.
  () · 신규상장종목은 매매개시전 단일가매매 시간(08:00~09:00)동안 일정가격 범위 내의 접수한 매도 · 매수호가에 의해 체결된 최초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합니다.
  - · 최초가격(기준가격) 결정시의 호가범위는 평가가격의 90%(우선주의 경우 50%)~200% 이며 당해종목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가격의 50%~200% 범위내의 호가를 접수합니다.
- ② <u>기준가격 결정이후(09:00 이후)에는 당해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된 가격제한폭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</u>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.

평가가격이란

- 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가격 결정시, 비정상적인 가격의 호가에 의한 주가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호가범위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.
- 평가가격 설정의 기준
- 당해종목이 이미 투자자에게 평가를 받은 경우(공모가 KOSDAQ주가)에는 당해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하면 이 업내용의 변화가 있는 경우(기업분할, 신설합병 등)에는 이론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합니다 (중)한,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의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 가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.

` KOSDAQ'이서 `KOSPI'로 `이건사감'한 때

구분		평가가격	
신규상장	일반종목	공모가(모집 또는 매출시의 발행가액)	
	KOSDAQ종목	KOSDAQ시장에서의 최종일 종가	
	지주회사	(상장법인등의시가총액 +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)/ 주식수 (단, 상장법인등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경우 최저호가가 격은 50%로 함)	
	기타	주당순자산가치(순자산가액을 상장신청일 현재의 발 행주식수로 나눈 수치)	
재상장	기업분할(정상)	분할전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시가총액×순 자산분할비율/분할후종류별주식수	
	기업분할(부실)	존속법인 : 분할전 최종매매거래일의 종가 신설법인 : 주당순자산가치	
	신설합병	합병전 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합계/합병후 회사의 종류별 주식수(최저호가가격은 50%로 함)	
주식병합(감자)		전일종가에 병합비율을 곱한가격(저가에 의한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)	
우선주	우선주 최초상장	보통주의 전일종가	
	종류가 다른 우선주의 상장	기상장우선주의 전일종가를 단순산술평균한 가격	

'강자'의 전가격 화범위는 '정가금액'의 50%~150%임.

X 제 상이 따른 제품이가 발생하고 참 제재에 되었을 때로 '얼마가경'이 객임.